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

2) 회부일자 : 2026년 6월 8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6. 18.)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정현 예산법무과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금리 예금 예치 규정 마련(안 제5조)

나.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 추가(안 제7조제2항5호)

다.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7조제3항)

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및 위원회 활동 현황 관리 규정
신설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마.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독자적인 위원회로 구성토록 하는 등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만큼 조례 개정
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2 제3항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안 제7조의2 제4항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 를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민간전문가”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위촉직 위원: 포항시의회 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생략)	제7조의2(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가.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